

제 호

과 학 관 등 록 증

1. 과학관의 명칭 :
2. 과학관의 구분 : (예)국립과학관 / 종합과학관
3. 소재지 :
4. 설립기관(설립자)
 - 명 칭(성명):
 - 주 소:
5. 대표자
 - 성 명:
 - 주 소:

「과학관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· 특별시장
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
· 특별자치도지사

직인

주 의 사 항

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폐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